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 서울행정법원 2021. 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우리은행)와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하나은행)을
중심으로 -

임 수 민*

目 次

I. 논의의 배경	III.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국내·외 중요 판례
II. 서울행정법원 2021. 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우리은행) 과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하나은행)의 소송의 경과 및 시사	IV. 주요 해외 입법례의 동향 V.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소개 VI. 대상판결이 개정법에 끼친 영향 VII. 추가 개선의 필요성 및 맺음말

■ 투고일자 : 2024년 11월 18일, 심사일자 : 2024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12월 20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변호사

I. 논의의 배경

경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반면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위 사례를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의 미비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하여 다시금 논의가 집중된 바 있다.

2018, 2019년경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규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라 함) 불완전판매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보고 각 은행장¹⁾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문책경고)을 내린 사실이 있다. 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각 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²⁾, 각 취소소송에 대한 각 판결(이하에서는 '대상 판결', 또는 각 판결을 '우리은행 손태승 판결', '하나은행 함영주 판결'이라고 지칭함)은 내부통제기준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하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판단하는 기준 내지 척도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엇갈릴 만큼 상이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판례 판단 법리를 충분히 살펴보고, 위 대상 판결의 시사점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위한 대표이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금융법상 제재의 실효성 있는 감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법리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우리은행 손태승 전 행장, 하나은행 함영주 전 행장

2) 서울행정법원 2021. 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우리은행 손태승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하나은행 함영주 판결)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II. 서울행정법원 2021. 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우리은행)과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하나은행) 사건의 소송의 경과 및 시사점

1. 소송의 경과

가. 서울행정법원 2021. 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우리은행 손태승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투자중개업자로서 2017년경부터 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증권사가 발행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운영하였고, 우리은행은 위 DLF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중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사모펀드인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9. 8. 23.부터 2019. 11. 1.까지 우리은행의 'DLF상품 선정 및 판매 적정성 등'에 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0. 3. 5. 『“우리은행의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1) DLF불완전 판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즉,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과도하게 DLF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우선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주체는 '회사'이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 주체는 1차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상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업무에 대하여도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5가지 위반사실 중 1개의 처분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우리는 행 내부통제 실패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만을 처분 사유로 삼았어야 하나, 이 사건 DLF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량 피해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점에는 사전 예측하기 어려웠을 다양한 형태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및 남용행위 등을 들어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관련 처분 사유로 잘못 구성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우리은행 내부통제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DLF불완전 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의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하나은행 함영주 판결)

1)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DLF판매 및 대규모 원금손실사태가 발생하자 2019. 8. 22. 부터 2019. 11. 1.까지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 상품선정, 판매 및 사후대응의 적정성 등’에 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20. 3. 4.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하나은행이 대상기간 동안 집합투자증권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1) DLF불완전 판매, (2)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3)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4)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위 부문검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대표이사는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문책경고가 상당하다는 제재를, 부행장에게는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정직 3월의 처분을 통보하

3) 금융감독원이 처분사유로 지정한 위반사실: 상품선정절차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점검 체계 미비 등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 취소 사유로 주장한 명확성 원칙 위배 부분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문언상 의미와 목적론적·체계적 해석 및 상위법 합치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보다도 위임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지배구조 규제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강화하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내부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는 마련해 두었더라도... 사실상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 실효성이 없다면, 이는 결국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규정된 지배구조법령 소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원고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①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②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③ 상품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 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기초자산의 확대에 의한 광범위한 금융투자상품이 등장하고, 경영업무의 확대에 의한 금융투자업 규제대상 기관의 확장 등으로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법령에 의한 규율보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내부적 통제기능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보다 중요해졌음을 이유로 결국 외부적 규제는 내부통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즉,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대상판결의 비교(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한 공통 법리

양 재판부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위 관련 조항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내부통제기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지배구조법 제24조4), 동법 시행령 제19조5)의 위임에 따라 감독규정 제11조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6)에서

-
- 4)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 제11조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기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정하는 [별표3]7(위 각 사항을 포함하여 '법정사항'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
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법 제2조 제1호 나
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
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나.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
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
계의 마련 및 운영
-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7)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2.12.21.>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해당 금융회사가 금 용지주회사인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이 「금융지 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금융회사가 보 험회사인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 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 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 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라.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실 사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마.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바. 지급여력비를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 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중개인으로 등록하 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 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라.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 한 사항 마.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금융회사가 금 용투자업자인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 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⑧(위 각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사항'이라 함)는 법정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밖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원칙이나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법령 및 수권규정이 의도하는 핵심적인 '내부통제기능'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적합성원칙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우리은행에 대하여 법원은 판매매뉴얼 및 펀드 지침 등은 판매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식상 내부통제기준에 위 법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운영상 문제일 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하나은행에 대하여는 (1) 기존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오래된 정보로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막고자 하는 내부통제 목적이 실현

8)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실행지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영」,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초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의과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정보교착 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들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들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혹은 그 자회사들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될 수 없고, 투자자성향 산출결과의 확인, 임의상향의 방지, 등록 또는 보관 절차 등이 없다는 점, (2) 자산운용사의 자료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설명서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위 절차마련의 필요성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 (3) 위험상품 권유 또는 임의상향을 금지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시 점검 및 처리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임의상향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점을 들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점검체계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우리은행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함을 이유로, 내부통제규정에 형식적으로 법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주요 부분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주체를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은행장의 책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상품출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우리은행의 경우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내부통제기준이 주요부분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나은행에 대하여도 상품위원회 의결 생략, 예외에 대한 규정 및 위원회로의 사후 보고와 위원회의 점검의무 규정이 규정되었음을 이유로 내부통제 점검기준 자체는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비판 및 향후 논의대상

양 재판부는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감독규정 [별표3]은 법정사항, [별표2]는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판단을 하였다.

반면 우리은행 판결에서는 [별표3]의 법정사항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별표2]의 고려사항의 미비가 발생하였더라도 핵심적 기준의 위반을 아니라고 본 반면, 하나은행 판결에서는 [별표3]의 법정사항을 마련하였더라도 [별표2]의 고려사항이 현실적인 운영절차까지 반영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에 대한 양 재판부의 해석 차이가 위와 같은 상반된 판결을 불러온 원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내부통제기준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기준 미비를 판단하는 기준 내지 척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엇갈릴 만큼 상이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우리은행 손태승 판결은 금감원이 제시한 내부통제 관련 처분사유 5개 중 1개만 인정하면서 '문책경고'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징계양정 판단에 대하여 DLF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간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상품 개발 또는 판매할 금융상품의 선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견제적 기능'과 '정보유통'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위 5개의 처분사유 중 1개만 인정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에 중대한 미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⁹⁾ 이에 반해 하나은행 함영주 판결에서는 전반적 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 '사실상 예측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강조한 우리은행 손태승 판결과 비교해볼 때, '내부통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다 강조하고 있어, 두 대상판결 중 이 사건 하나은행 함영주 판결이 보다 내부통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그 큰 이유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우리나라 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찾기 위하여 내부통제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해보고자

9) 노종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 -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건 중심으로, 경제개혁연대, 2022, 제23면 참조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판례의 소개 및 해외 입법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Ⅲ.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국내·외 중요 판례

1. 이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국내 법리의 발전

회사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법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적 고려가 규범의 주요한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된 차이점이 있지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국내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발달 및 그 법리에 영향을 끼친 주요 미국 판례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유니온스틸 담합 사건)¹⁰⁾

이 사건은 유니온스틸 주식회사가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동종 다른 회사와 담합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주주였던 원고¹¹⁾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사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가 직접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사의 감시의무 이

10)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평석: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법조』 제70권 제6호(2021).

11) 원고는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이후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유니온스틸이 흡수합병되면서 동국제강 주식회사 발생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¹²⁾하면서, 철강 산업의 특성상 동종 업체들이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높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책무에 대하여 논하면서, 일관되게 기업들이 법정 제도뿐만 아니라 특유법적 위험에 대응하는 개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를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내부통제시스템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완전한 내부통제의무의 이행 요건이 된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명시하였다.

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대우건설 판결)¹³⁾

이 사건은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공사 등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더불어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12) 재판부는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이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13)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평석: 김정호,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법률신문(2022년 7월 7일자)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및 각 약 97, 25, 1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 대표이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집행유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우건설 주주들¹⁴⁾이 대우건설의 감사위원회에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30일 이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 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유니온스틸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이에 덧붙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①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②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하였다.

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STX조선해양 판결)

이 사건은 STX조선해양이 선박제조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가 되

14) 원고들은 대우건설 발행주식을 2013. 10월경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인데, 그 주식의 합계는 42,750주로 대우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을 초과한다. 이는 상장회사 특칙인 상법 제 542조의 6 제6항에 의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소수주주에 해당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었는데, STX조선해양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대하여 판시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제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및 다른 이사의 회계부정을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또 “대표이사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STX 조선해양에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또 제무제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적적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STX 조선해양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어떠한 직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내용이나 직위에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그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례라 판단된다.¹⁵⁾

2.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영향을 끼친 미국 판례

가. 델라웨어주 *Marchand v. Barnhill* 판결¹⁶⁾

이 사건은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아이스크림 생산업체인 Blue Bell사의 제조설비에서 식품안전에 위해한 요소들의 발견 및 수차례 검출된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해 고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상 손실과 유동성 위기에 대하여, 주주들이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사 및 임원에 대하여 Caremark 기준 위반을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5) 윤승영, “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2022), 14면 참조.

16) *Marchand v. Barnhill*, 212 A.3d 805 (Del. 2019) (이하 ‘Marchand 판결’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당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¹⁷⁾을 인정하면서, Blue Bell 이사회가 식품안전
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내부통제시스템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면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회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기
업에 특화된 방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aremark 원칙의 최소한의 요구로써 ‘이사회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사회 단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식품안전에 필
수적이고 사업상 매우 중요한 영업인 상황(essential and mission critical)에서 이사회 단
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이 미친 국내 판결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최근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살펴본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
임에 대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리나라 판례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한정되기 때
문에 비교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2019년 Marchand 판결에서 도출된 ‘사업상
핵심적인 사항(Mission Critical)’ 법리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업
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니
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
는 업무’의 판단에 중요한 논거가 된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과 관
련한 델라웨어주 판결은 STX조선해양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
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¹⁸⁾

3. 소결 및 사건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2021년 11월 유니온스틸 판결, 2022년 5월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판결, 2022년 7월 STX 조선해양 판결을 통해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
축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설계되었는데, 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

17) 대법원은 Blue Bell 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lue Bell 사에는 식품안전을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가 부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였
다.

18) 윤승영, 앞의 논문, 34면 참조

와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의 1996년 Caremark 판결 이후 지금까지 판결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특히 2019년 Marchand 판결에서 도출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니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법리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미국의 델라웨어 주 법리는 STX 조선해양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대상 판결과 관련하여 유니온스틸 판결의 법리가 해당 판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통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실효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V. 주요 해외 입법례의 동향

1. 미국

미국 내에서 기업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고,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¹⁹⁾ 프레임워크에서는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의 마련과 관련하여 '합리성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하였다. 또 기업내부통제 제도의 구축과 유지에 관한 사베인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SOX법'이라 함)²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통해 COSO 프레임워크를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프레임으로 제시하였다.²¹⁾

1990년대 이후 증권관련 연방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SEC는 위반행위자 뿐만 아니라

19)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1985년 회계 관련 여러 협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단체의 이름)

20) 2002년 사베인 옥슬리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리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21) 이효섭 외, '주요국 내부통제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2. 10면 참조; 장혜명 외3, '금융기관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취소소송 판례의 시사점', 東亞大學 學校 出版部에서 재인용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그 행위자가 소속된 금융회사 및 그 행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개인 감독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였다.²²⁾

2. 영국

영국의 금융감독기관(FCA)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권한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 규율로 Principles for Business의 Principle 3 Management and
Control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통제할 합
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고위 경영진에게는 금융서비스시장법상 법적 의무
가 부과되는 바 그 지위상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임원에
대해 제재조치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²³⁾ 위 규칙의 적용을 받는 상급임원이 고의 또
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규제상 책임을 지
며, 의무를 위반한 개인은 견책, 특정업무의 수행중지, 민사제재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
국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행정규제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인적 제재 또는 금전제재
를 받은 경우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전제재의 경감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내부통제재도는 2000년대 초 이사의 위험관리체제 구축의무를 인정하는 일부
판례들을 계기로 회사법상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미국 COSO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일본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에 규율하였다. 그러나 일
본은 대기업 또는 이사회 설치 회사가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를 수행하거나 금전적 제재를 수행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2) 다만 위 감독책임은 미사소송이나 형법상 책임이 아니고 과징금이나 행정처벌의 대상이라 점에
서 특이점이 있다.

23) Eunice K. Kim, '금융회사임직원의 감독책임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미국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
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2013. 3., 201-203면 참조; 장해명 외3, 위의 논문, 113면 재
인용

4. 우리나라 현행법제와의 비교 및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외형적으로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하였는데, 개인감독책임을 감면해주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즉 이러한 감면 수단의 결여로 인해 경영진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등을 활용해 불이익을 회피하게 되는 바, 이는 준법감시제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내부통제제도를 보면 대부분 일련의 금융 사고를 경험한 이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단 특이한 점은 일본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련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서 보다 강력하다.

결국 대다수 나라의 입법례들이 일련의 금융 사고를 겪고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민·형사 제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하나, 그간 발생하였던 수많은 금융 사고에 책임을 지는 CEO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향후 제2의 홍콩 ELS사태 등으로 소비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입법정책을 보수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24. 7. 3자로 시행이 예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어, 위 개정안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V.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소개

2023년 6월 22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일 제정 및 2024년 7월 3일 시행이 예정된 상태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1)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의 도입, (2) 대표이사를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포함한 각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부여, (3) 책무구조도 자격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4)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의 명확화, (5)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 및 면책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²⁴⁾

1. 책무구조도 마련의무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에서 도입된 개념인데, 영국에서는 금융
회사의 고위경영기능을 담당하는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과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조치를 위하여 각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부통제제도와 임원적격성 심사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
별 금융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무구조도 상의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
련하여 금융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거나 해당 법령 상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
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
표인 '책무체계도'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참고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마련 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²⁶⁾

은행	지주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자산 20조원 이상 + 종금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자산 20조원 이하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자산총액 7천억원 이하

- 1단계-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제출
- 2단계- 법 시행 후 1년까지 제출
- 3단계-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출
- 4단계- 법 시행 후 3년까지 제출

24)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
미나' 전자자료, 주최: 국회의원 민병덕, 금융소비자연맹, [민병덕의원실], 2024년 3월 29일 - 발
제자 한창희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혁방향', 제39면 참조

25)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
미나' 전자자료, 주최: 국회의원 민병덕, 금융소비자연맹, [민병덕의원실], 2024년 3월 29일 - 발
제자 성수용 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현황', 제28면 참조

26)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29면 참조

2.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관리 의무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금융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 반복적, 광범위²⁷⁾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²⁸⁾

3. 임원의 내부통제 · 위험관리에 대한 관리 의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 의무는 책무구조도 상 해당임원이 소관 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에 해당한다.

임원²⁹⁾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

-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적정성 점검
- 나.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효과성 점검
- 다.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 라. 내부통제 미흡사항 파악, 대응, 개선
- 마.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이사회 보고 등

4.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은 기존의 임원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 업무경험 · 정직성 ·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³¹⁾

27) 모든 세세한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8)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0면 참조

29) 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 3 및 제35조의 2에서 같이 규정한다.

30)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1면 참조

31)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2면 참조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또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적용대상 임원의 선임과 더불어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 시에도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금감원에 보고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³²⁾

즉 이러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5.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즉,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전까지 '이사회 밖'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 온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³⁾

6. 내부통제 위험관리·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가.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임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 의무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제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 의무가 있는 임원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는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 이므로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자 책임이 아닌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³⁴⁾

나. 감경 또는 면제

임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

32)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2면 참조

33)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2면 참조

34)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3-34면 참조

관리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및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³⁵⁾

VI. 대상 판결이 개정법에 끼친 영향

대상판결에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행위자로서의 마련의무와 더불어 감독자로서 실무를 감독할 의무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배구조법령 체계에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 규제 영역에 불과하여 수범자가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전제 하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³⁶⁾. 또한 현행 지배구조법령 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대상판결과 같이 재판부의 판결이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기 다른 법률에 열거되어 있던 법령을 통합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구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하여 법령을 정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 라임 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었다.

2024. 7. 3.자 시행 예고된 개정법 또한 금융회사 임원 및 대표이사의 감독의무를 법령상 명시하였고,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 및 면책 기

35) 성수용 교수, 위 국회 전자자료집, 제33-34면 참조

36) 장혜명 외3, 위의 논문, 제116면 참조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준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Ⅶ. 추가 개선의 필요성 및 맺음말

이상과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여러 사례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개선은 불가피하였다. 법령의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발전시키고 체제 자체의 흠결 및 유효성 점검 장치를 구비하여 흠결이 없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를 통해 이를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³⁷⁾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제재에 따른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위 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부분, 즉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는 법체계적 측면, 제재의 유형, 사법심사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법 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 대한 내부통제 위험관리·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감경 또는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재의 효과 유무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신분 제재보다는 기관에 대한 제재 및 금전상 제재(영업정지, 금전 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금전 벌의 한도를 대폭 높여 실제 금융회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중한 금전벌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³⁸⁾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으로 사실상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재보다는 일시적이고 강력한 사법상 제재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지배구조법 개정법에서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 및 제재들이 신설되어 2024. 7. 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상, 위 개정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해 본다.

37)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제455면 참조

38) 최영주, 금융법상 제재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의 모색, 법학연구 63권 3호, 부산대학교, 2022, 제 152-154면 참조

참 고 문 헌

논문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대한변호사협회, 2023
-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이한경, 금융회사 클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BFL 11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정준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22
- 최영주, 금융법상 제재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의 모색, 법학연구 63권 3호, 부산대학교, 2022
- 윤승영, 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22
- 노중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건 중심으로, 경제개혁연대, 2022
- 장혜명, 김주영, 박석현, 라웅진 공동집필, 금융기관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취소소송 판례의 시사점-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을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出版部

자료

-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전자 자료집], 주최: 국회의원 민병덕, 금융소비자연맹, [민병덕 의원실], 2024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국문초록>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는 이사(대표 이사)에 있다. 우리 대법원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인정해왔다. 그동안 수차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판례가 존재해 왔고, 이를 통해 중요한 법리도 도출되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9년 *Marchand* 판결에서 도출된 '사업상 핵심적인 사항 (Mission Critical) 법리'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최근 판례인 유니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 STX조선해양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 법리의 발달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일련의 금융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였다. 또한 이러한 금융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행정소송은 상당한 법리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 및 하나은행 판결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더불어 종래 증권관련 법령을 통합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및 제도개선 등의 법령 정비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통해 향후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2024. 7. 3.자로 시행이 예고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새로 마련된 규정 및 제도를 알아보고 추가로 개선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내부통제시스템, 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과 적정성,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이사의 선관주의

<Abstract>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rough the Case of Improper Sales of
Overseas Interest Rate-Linked Derivative-Linked Funds (DLF)
and Examination of Improvement Directions

Im, Su Min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corporate law lies with the directors (including the CEO).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even before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were enacted. Over time, there have been numerous precedent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by directors, leading to the derivation of important legal principles.

The Delawar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Marchand ruling in 2019, sugges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r type of duties imposed on directors, derived from relatively recent precedents such as the Union Steel ruling and the Daewoo Construction ruling, as well as the STX Offshore & Shipbuilding rul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through such precedents, a series of financial incident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companies have frequently occurred, resulting in significant damages. Furthermore, administrative lawsuit regarding such financial incidents have yielded contrasting results, as seen in the cases of Woori Bank and Hana Bank, despite considerable legal development.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Despite legislative effort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ntegrating traditional securities-related laws and the enactment of the Former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have not been functioning properly, indicating the need for new improvement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and systems anticipated in the upcom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set to be enforced on July 3, 2024, it is desired to discuss whether there are any additional improvements or amendments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Keywords : internal control system, supervisory obligation of directors,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of financial company Daehyo directors, directors' priori principle

